

의안번호	2207749
의 퇴 인	김희정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계번호	25C0592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(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)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(이하 “전담기구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(제1항),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29조의2(청소년동반자의 배치 및 지원 등) 신설	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 상황, 위기 정도 및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둘 수 있음(제1항)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를 두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및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여야 함(제2항)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및 동종 업무 종사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청소년동반자를 고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(제3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5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(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)	실시 중 ※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2	안 제29조의2(청소년동반자의 배치 및 지원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(안 제9조의2)

- 개정안은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,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
- 다만, 현행법상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근거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이미 존재하고,¹⁾ 여성가족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 설치와 전담 공무원 배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조직 내 부서가 전담기구로 설정되고, 전담공무원 또한 그 부서 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 - － 참고로,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공무원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

1) 제9조의2(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관계 행정기관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"청소년단체"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, 조직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표] 지자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공무원 지정 현황(2025년 2월 말 기준)
(단위: 명)

구분	0명	1-2명	3-4명	5-6명	7-8명	9명 이상
시·도	3	6	3	0	2	3
시·군·구	180	44	0	2	2	0

자료: 여성가족부

- 청소년동반자 배치 근거 및 인건비 기준 마련(안 제29조의2 신설)
 -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 청소년동반자 확대 및 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현시점에서 각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수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을 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